

한천휴양림 주변에 편입된 사유토지 매입여부 결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5. 6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5. 6. 15

다. 상 정 일 자

○ 2005. 7. 4 : 제13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부위원회 제5차 회의

○ 2005. 12. 9 : 제13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부위원회 제1차 회의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재무과장 허길중

나. 제안사유

- 한천자연휴양림내(입구쪽)에 분산되어 있는 사유토지를 매입, 산림휴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·보완하여 이용객의 휴양 만족도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취득계획대상 토지

구 분	토지소재지		지번	지목	취득면적	재산가액 (공시지가)	비 고
	읍 면	리					
계	1	1	9		11,335 ^{m²}	천원 104,180 (7,767)	토 지
토지	한천	오음	1	임야	509	4,581	
"	"	"	2	답	1,471	13,533	
"	"	"	3	임야	1,329	12,227	
"	"	"	4	전	625	5,750	
"	"	"	5	"	1,626	14,959	
"	"	"	6	"	2,231	20,525	
"	"	"	7	"	1,369	12,595	
"	"	"	8	임야	1,336	12,291	
"	"	"	10	전	839	7,719	

- 취득사유

- 한천휴양림내(입구쪽)에 분산되어 있는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확충·보완

- 자연휴양림을 웰빙 상품화로 유도

○ 관련근거 :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용태)

본 안건은 한천 자연휴양림내 분산되어있는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산림휴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·보완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유토지를 매입하고자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답변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7. 붙임 : 한천휴양림 주변에 편입된 사유토지매입 여부검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